

#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4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4월 20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 마련의 조례상 근거인 안 제3조제1항제4호는 “종이관 등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에 대한 권장 및 홍보활동”을 명시하고 있으나, 친환경 장례용품 검증 및 유통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재질의 장례용품을 친환경으로 예시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“종이관 등”을 삭제하고,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을 위한 안 제7조제4항과 제7항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, 상조회사, 유족과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을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단서조항을 삭제함.(안 제7조제4항 단서)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3조제1항제4호 중 “종이관 등”을 삭제한다.

안 제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4항과”를 삭제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중 “감면 및”을 삭제한다.

## 수정안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3조 (장사문화 개선 등)                     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·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③ (생략)</p> <p>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 ① ~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⑤ ~ ⑥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</li> <li>2.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</li> <li>3.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</li> <li>4. <b>종이관 등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·홍보활동</b></li> <li>5.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</li> </ol> <p>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④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. <b>다만, 종이관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b>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⑦ <b>제4항과 제6항</b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b>감면 및 환불</b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	<p>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</li> <li>2.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</li> <li>3.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</li> <li>4. <b>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·홍보활동</b></li> <li>5.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</li> </ol> <p>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. <b>&lt;단서 삭제&gt;</b></p> <p>⑤ ~ ⑥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⑦ <b>제6항</b>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<b>환불</b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
2.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
3.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
4.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·홍보활동
5.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장사문화 개선 등) ① 서울 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·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 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</li> <li>2.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</li> <li>3.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</li> <li>4.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·홍보활동</li> <li>5.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</li> </ol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